



해뜨는요양원 소식지

* 면회 안내

- 사전예약 대면 면회 실시합니다.
(면회일, 시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시간 : 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 면회시 주의사항

- 반드시 KF 94 마스크 착용
- 호흡기 증상 있을시 방문 자제
- 음식물 섭취 금지

(2024년 입소안내)

등급	1일 이용금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0일 기준)	월 입소비용 (30일 기준)		
		일반(20%)	경감(12%)	경감(8%)		일반(20%)	경감(12%)	경감(8%)
1등급	71,010	14,202	8,521	5,681	식대2,500* 3식 =7,500 1일 간식 1,500원	426,060	255,630	170,430
2등급	65,890	13,178	7,907	5,271		395,340	237,210	158,130
3,4등급	60,740	12,148	7,289	4,859		364,440	218,670	145,770

* 기관정보

기관명 : 해뜨는요양원

기관종류 :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기관유형(급여종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주소 : (41526) 대구광역시 북구 공현로 10-7 (북현동) 지상주차장 완비

교통편 : 버스

간선: 101, 101-1, 300, 303, 303-1, 305, 323, 323-1, 410, 410-1, 503, 623, 706, 719, 836, 937

지선: 동구1, 동구1-1, 동구2, 북구1, 북구2

순환: 순환3, 순환3-1

전화번호 : 053-958-5400

팩스번호 : 053-955-9090, 053-939-2628

e-mail : sunrising5400@daum.net

홈페이지 주소 : <https://sunrising5400.tistory.com/>

◆ 프로그램 운영

주 3회 인지프로그램

주 1회 여가프로그램

*** 알려드립니다 ***

- *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전화 1577-1389), 112(경찰), 119(구급) 등 연계,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활용 등 다양한 시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예측징후 및 신고방법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 어르신과 함께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어르신과 함께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하여 어르신과 함께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4. 바깥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거나, 반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에서 생활한다
5. 어르신과 자주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다들, 복싱 등 권투가 사주들린다
6. 어르신과 자주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다들, 복싱 등 권투가 사주들린다
7. 어르신과 자주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다들, 복싱 등 권투가 사주들린다
8. 어르신과 자주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다들, 복싱 등 권투가 사주들린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나요?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112 또는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 어플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센터는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그 후의 조치에 관하여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존중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서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 어플



구급차
119
경찰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는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존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중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 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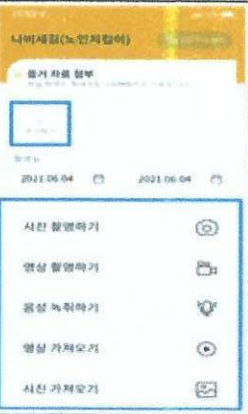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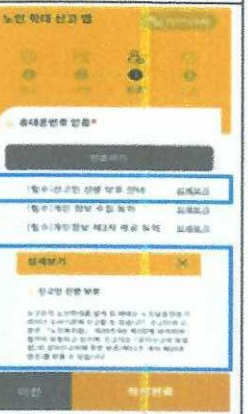
**노인학대 신고 모바일 앱(App)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앱 다운로드>

(삼성 J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모바일 앱 화면>

위치기반 도입	증거자료 첨부	익명성 보장
		
위치기반의 신고임으로 노인학대 신고 시 학대발생장소와 관할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연계	학대 의심자는 스마트폰 상으로 촬영 (사진, 동영상, 녹취) 하거나 미리 저장해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핸드폰 번호(문인인증)만 수집 하면 신고인 신원보호 관련 사항 안내
나비새김(노인지킴이)_구글플레이 QR코드		나비새김(노인지킴이)_앱스토어 QR코드
		